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정비및단계별 집행계획에따른의견서

- 금년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존치·폐지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함으로써 그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성과물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 그동안 도시계획으로만 결정고시된채 장기간 미집행으로 방치되어온 도시계획 시설을 전면적인 재정비로 시민의 사유 재산권 제한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며 도시계획시설관련 민원과 대지 매수청구권, 보상 등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기대되나
-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 폐지되는 기존 소로에 접한 경우 각종 인·허가의 제약으로 작용되어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로 인해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하고, 또한 읍면동 순회 설명회시 지역 시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본 계획에 최대한 반영되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시설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2001년 12월 13일

파 주 시 의 회